

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827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7. .
제 출 자 오 강 현 의원

1. 제안이유

김포시 지역서점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 문화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적용 범위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시장의 책무(안 제5조)
- 라. 지원계획(안 제6조)
- 마.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홍보(안 제8조)
- 사. 포상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협의
- 다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7. . ~ 2021. 7. .
 - 나) 예고결과 :
 - 2) 부서협의
 - 가) 협의기간 : 2021. 7. . ~ 2021. 7. .
 - 나) 협의결과 :
 - 3) 관련부서 : 시립도서관

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「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2에 따라 인증 받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김포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계획)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2. 작가와의 만남, 독서동아리 운영,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
3.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

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)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, 전시, 토론회, 작가와의 만남 등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1. 6. 9] [법률 제17626호, 2020. 12. 8, 일부개정]

중소벤처기업부(정책총괄과) 042-481-4376

중소벤처기업부(통계분석과) 042-481-8913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4. 1. 14., 2015. 2. 3., 2016. 1. 27., 2018. 8. 14., 2019. 12. 10., 2020. 10. 20., 2020. 12. 8.>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-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4. 1. 14., 2015. 2. 3., 2016. 1. 27., 2018. 8. 14., 2019. 12. 10., 2020. 10. 20., 2020. 12. 8., 2020. 12. 29.>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-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 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[시행일 : 2021. 12. 30.] 제2조

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8. 6.] [경기도조례 제6277호, 2019. 8. 6., 일부개정]

경기도(콘텐츠정책과), 03180084653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·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,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08. 06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지역서점”이란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이라 한다)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들과 협력하여, 완전한 도서정가제의 정착 및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,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)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2.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
3.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[신설 2019. 08. 06.]

제6조(지역서점 지원)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08. 06.>

1. 창업상담, 컨설팅, 교육,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
2. 협업사업, 문화·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등 경영개선 지원 <개정 2019. 08. 06.>
3. 홍보,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
4. 자금·인력·기술·판로·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지원 <개정 2019. 08. 06.>
5. 지역서점,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6.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 [신설 2019. 08. 06.]

7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의2(지역서점 인증)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

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요건,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08. 06.]

제7조(지역서점위원회 설치)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하는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 08. 06.>

1.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
2.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3.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
5.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[신설 2017. 6. 13.]
6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·자문에 부치는 사항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9. 08. 06.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1. 경기도의회 의원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2.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3.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4.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5.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6.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7.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8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9.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
3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4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
5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

[본조신설 2019. 08. 06.]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·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. <개정 2019. 08. 06.>

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08. 06.>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 [신설 2019. 08. 06.]

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<개정 2019. 08. 06.>)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한 지역서점 협동조합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 08. 06.]

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, 시·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경기도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(표창) 도지사는 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, 서점,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 「경기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9., 2019. 08. 06.>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2016. 11. 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6. 6. 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부칙(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) <제5778호, 2017. 12. 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9. 08. 0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